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92개 직무교육기관,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대표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의 안전·보건교육 안내 시 법적 내용 안내 철저

1. 관련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(안전·보건교육)
2. 최근 일부 미등록된 기관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면서 안전·보건교육 안내를 빙자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영업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, 직무교육기관,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업체에 안전·보건교육을 안내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정보 및 안내방법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안내 내용 】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.
- 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[별표1]에 따른 대상사업(또는 사업장)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.

※ 서면 안내 뿐만 아니라 구두안내시에도 해당됨

3. 향후, 직무교육기관,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안전·보건교육 안내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등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
전문위원 최선미 행정사무관 유봉현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전결 2018. 1. 26.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543 (2018. 1. 26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세종정부청사 11동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739 팩스번호 044-202-8093 / mimi17@korea.kr / 비공개(5)